### 제360회국회 (임시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3호

국회사무처

### 2018년5월2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6.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 11.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3.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4.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
- 18.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2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
3.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3
4.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3
5.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3
6.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3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3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3
9.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3
10.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3
11.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3
12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우용계획변경안

13.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3
14.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3
15.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12
О	의사진행발언12
17.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14
18.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14
О	신상발언15
17.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계속)17
18.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계속)17

(10시29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곽대훈 의원 대표발의로 직업안정법 일 부개정법률안,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재정 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산 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3건의 의원 발 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언주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북한에 억류·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드루킹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오신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울 관악구을 출신 바른 미래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 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 한 법률안(대안)은 김성태 의원, 김동철 의원, 장 병완 의원이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 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률안과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야 합의한 바에 따라 제명 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 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 한 법률안으로 하고, 특검의 수사 범위로는 제1 호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회원 등이 저 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제2호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3호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 위,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 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며, 특별검 사후보자 추천 방식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로부터 추천받은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 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특별검 사는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을 수사인력으로 활용하고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에 한정해 연 장기간 30일로 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 인으로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 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11.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 12.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 계획변경안
- 13.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4.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6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신용 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 5항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 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농 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 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 일정 제14항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4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백재현 위원장 나오셔서 1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재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세 차례의 소 위원회의 심사, 거듭된 간사 간의 협의 등을 통 해 심도 있고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 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심사 과정에서 재원 배분 방향, 추경사업으로서 적절성 등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국가재원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및 관련 업종 대책 에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정을 넘어서까지 여야 합의 에 진력하여 주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님, 바른미래당 김관영 위원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황주홍 간사님 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 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뒀으며 증 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재원이 청년층에 대 한 실질적인 취업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 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 정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관 광진흥개발기금, 농지관리기금, 기술보증기금, 소 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9건의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고 정보 통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건의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 였습니다.

수정 규모를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3조 8397억 원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5985억 원을 감액하고 57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전체 지출 규모는 3조 8179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218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감액되거나 중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 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8억 원,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103억 원 등 추경 편성 사업으로서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업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희망근로 지원 121억 원, 창업저변확대 74억 원, 청년 취업·구직 활동을 지원하는예산을 증액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에 213억 원, 지역투자촉진에 37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주택도 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에 1000억 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 자에 500억 원 등을 감액하였고 고용보험기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 원, 농지관리기금에 맞 춤형농지지원 20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 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자동차, 조선 관련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예산 및 세제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 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구조조정 지역 서민의 삶이 한층 안정됨과 아울러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〇의장 정세균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광명시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버젓이 유지하면서 전혀 진정성 없이 임하고 있어서 국민혈세만 날리는 이번 추경안은 마구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특검안 등과 연계되어 정치적 타협이 불 가피했다고 합니다만 이번 추경의 심각한 문제점 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이 재난 수준이라서 이번 추경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켜 준 지난 추경과 2018년도 일자리 예산을제대로 쓰지도 않고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도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업대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그 구조적인 위기에 역주 행의 가속페달을 밟은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 는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2018 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 게 되고 있습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사상 유례없는 생활체감물가, 서민물가의 상승으로 고통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몰라도취약층은 더더욱 미래에 대한 불안, 고용에 대한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취약 근로층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정부 는 근로장려세제나 복지로 해결을 해야지 경제시 스템에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팔을 비틀어서 정부가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줄도산하 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 그래도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 혁신이 제대 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만 있는데 4대 보험, 상여금, 숙식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 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개방경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각 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며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 집행률이 겨우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혜 대상들이 대부분 수급자이거나 신불자이거나 이 런 경우가 많아서 고용보험 가입을 스스로 꺼리 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모르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3월 26일 정부는 국가공무원 4637명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시생이 2017년 44만 명으로 지 금 급증한 상태입니다. 민간은 쪼그라들고 공공 부문만 살찌우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과연 경제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지난 3월 OECD 한국노동시장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대기업, 공공부문 의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추가로 정규교육 시스 템 밖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무원 증원이 실은 일 자리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우리 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고용보 험기금 고갈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도대 체 어쩔 작정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재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세 자영업 자・중소기업 죽이고 일자리 죽이고 물가만 올리 는 최저임금정책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시 원 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 사람이 망해도, 고용이 주 는 한이 있어도, 세계 경쟁에서 죽어나는데도 국 가가 개입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나라 경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 공약보다 나라 경제 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는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 확보한 추 경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냉철하게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在仲 의원 이언주 의원님, 참 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수영구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투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며 지난해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또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라 는 수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9.9%라 는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올해 3월 실업률은 11.6%라는 동 기간 기준 17년 만에 가 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 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만으로는 절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의 체질을 개선 하기보다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

핵심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인건비 지원 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비어 있는 중소기업 일자 리 20만 개는 질이 낮아 고용시장에서도 경쟁력 을 잃었고 자생력을 잃은 좀비기업이 대부분이라 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생산성에서 옵니다. 경제의성장을 위해서는 하위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좀비기업들을 생태계에서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청년취업을 명분으로 좀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 자해행위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청년들에게 인적 자본 형성이나 평생 고용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생산 기업에게까지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5년 정도 실업률을 낮춰 보겠다는, 올바른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대규모 공무원 증원도 모자라 이제는 구조조정 되어야 할 좀비기업에까지 월급을 챙겨 주겠다는 정부의 추경안은 우리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 합 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원 기반을 확충하고 균형재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이 말은 김동연 부총리께서—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2012년 기재부차관 시절 지속가능한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지나친 재정정책을 경계하고 균형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한 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55조로 6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채무 증가 속도가 11.6%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그리스보다도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국가재정에 이렇게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또다시 확장적 재정에 나선 이 정부가 과연 국가의미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이라면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엄청난 국가부채를 부담하는 동시에 지금의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까지 책임지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유재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의원** 정읍·고창, 고창·정읍 출신 민

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각 당 간에 합의와 파기가 다반 사처럼 반복되었고 실현 불가능한 심사기일 지정 으로 상임위 예비심사가 배제되어 버린 아주 잘 못된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 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떠나 내용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업종 대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참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는 대책입니다. 하 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여 약 25조 2000 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 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 업률 또한 11.6%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은 자그마치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예산이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약발이 전혀 서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업종 대책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여당 지도부로부터 한국지 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받고 이번 원포인트 국회 개회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심의과정에서 여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지금 군산과 전북의 경 제는 폭망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폭삭 망했습니 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 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고 공공발주로 가동중 단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 다. 하지만 조선산업에 10조 원 넘게 지원하고도 군산 도크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민 혈세 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한국지 엠 창원과 부평공장 가동만 보장하는 것으로 알 려졌습니다. 계약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산과 전북 경제가 폭망하는 사이 여당 경상 남도 도지사후보는 5년 동안 8250억 원을 투자한 다며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운 경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 경과정에서 군산과 전북은 정부 여당으로부터 기 만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북은, 군산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입니 까? 같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쪽은 도움을 받 고 한쪽은 외면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촛불혁명의 결 과라는 말입니까?

우리 민주평화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 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거 대한 파고가 삼켜 버린 전북 경제를 연명시키기 위해 이번 추경이 산소호흡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심정에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했던 것입니 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듣기 에는 달콤하지만 결코 실효적인 대책이 아닙니 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증요법으로 일자 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종 전환도 연 착륙시킬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것, 그것에서부 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좋은 일 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 니까?

사실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그 자체가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인위적 일자리 정책이 성 공한 사례는 세계사적으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1990년대 독일, 프랑스의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페기되기도 했던 것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부문을 축소ㆍ 개혁하고 규제를 철폐해서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합니다. 적극적인 환율방어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장이 앞장서고 분 배가 반드시 뒤를 따르는 선순환이 구동되어 성 장지속력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 제가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언 어도단이고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치열하게 고

민하지 않고 당장의 현상만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서 엄중한 회초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연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 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추경안의 세세한 구체적인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를 무너뜨 리는 국법 농단사건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고발하 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정 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면제조항을 악용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한 것도 모자라 서 국회 동의 절차마저 기피하고 국무회의 의결 로 갈음한 꼼수예산이라는 점을 고발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처럼 국회의 고유권한 인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위계로 패싱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예 타를 통과할 수 없는 혈세 낭비 사업들이 추경이 라는 뒷문을 통해 상습적으로 꼼수 편성되어 국 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대폭 무력화시킬 것입니 다.

이처럼 국법을 악용한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예산 공무원들은 국민께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하 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굴욕 과 더불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괴 참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추경안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사전 검열에 따라 보 고서를 황급히 대폭 수정한 의혹이 드러났습니 다. 발간 심의까지 마친 예정처의 추경안 분석보 고서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직후 30곳 수정, 5 곳 삭제, 6곳 추가되는 등 모두 41곳이 수정되었 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

다.

초본 27쪽 추경 대표사업이라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한시적 재정사업이라서 근본 대책 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이 '중·장기적 대책 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정반대로 수정되었 습니다. 45쪽 구조조정 사업에 관련해서는 '퇴직 인력을 채용할 기업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인건비 지원계획'이 라고 백팔십도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정이 아니라 가히 변조나 위조라고 할 만합니다.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추후 제출 할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업은 13일 국회의장 보고 직후인 14 일과 15일, 주말임에도 매일 10명 이상의 예정처 직원들의 비상근무를 통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모든 수정 작업이 이전의 부정적 평가에서 일관되게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급변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절대적으로 윗선의 개입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 한 예정처 실무자들의 제보도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폐기와 재발간을 반복했다는 의혹이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적법 한 계약 절차 없이 특정 업체에 제작을 맡기는 등 명백히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 니다.

만일 예정처의 추경안 분석보고서에 대해 윗선의 변경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행정부를 견제 감독해야 할 입법부의 책임과 권한을 무너뜨리는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정처의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존중하고 참고하는 절대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권력의 입맛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행정부의 수치를 심판하는 신성불가침의 나침반으로서 오직 진실만을 생명으로 해 온 우리국회의 위대하고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정처가 사전 검열을 받아 정부의 입 맛에 따른 어용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입법 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고 무 엇입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속상관은 국회의장뿐입니다.

예산정책처법 제2조에 명백하게 예정처의 독립 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추 경안 분석보고서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 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인지 묻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신성한 국회가 다시는 이러한 의혹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결연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최연혜 의원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최연혜 의원이 적시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었습니다. 나는 국회의장이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보고받고 수정을 지시하고 하는 사무관이아닙니다.

다음은.....

(「의장님 모르게 한 것이잖아요. 밑에서 임의로 수정한 것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의장이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장내 소란)

잘 듣고 얘기하시라고.

최연혜 의원 발언을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상조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허위사실 하면 안 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파주 평화의집에서 열렸습니다. 그 파주시 국회 의원 윤후덕입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에코세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창원, 통영, 거제, 고 성, 군산, 영암, 목포 등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 기 특별대응 지역을 살려 내기 위한 아주 갈급한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연됐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지요. 45일 정도를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아주 심도 있게 거의 밤을 새

워 가면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칫솔을 들어 보이며)

제가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칫솔이 있네요. 이 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 꼭지가 93개 사업이었습니 다. 이 중에 야당이 90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했고, 전액삭감 주장이 41개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뒤편에서 예산 당국에 쥐어 준 증액 요청사항이 1조 1000억 이상이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20개 사업에 서 감액을 했고, 1건의 사업도 전액감액된 사업 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벽지에 있는 산업단 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통비를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정부가 추경예산안에 편 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야 3당의 집요한 반대와 정책 훼손으로 인해서 5만 원밖에는 드리지 못하 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액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야당 과 합의하여 그리고 협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증액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2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 인건비 이것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됨 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 라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채 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아쉽지만 100억 원 정도, 100억 44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정당 간에 증액 요청 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시 설이지요. 이를 위해서 248억 원이 증액 편성되 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 로당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314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인 수소차 보급 에 112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난히 쌀값이 시장에서 제 가 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이 32% 가 상승해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 지 원하는 예산이 그만큼 부족해서 이 부분에 3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공 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이 늘 본예산에서 책

정이 미흡하게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 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늘 지체되어서 정부의 외상값으로 남아 있었습니 다. 이 부분에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항목이 있는데 간략히 이 정도로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고용위기 지역 에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시게 되는 분들이 연관 중소기업체에 신속히 재취업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쓰이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8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및 13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하 신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50인, 기권 34 인으로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8인, 기권 39 인으로서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2인, 기권 36 인으로서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3인, 기권 35 인으로서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4인, 기권 37 인으로서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5인, 기권 35 인으로서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5인, 기권 33 인으로서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9인, 기권 33 인으로서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 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8인, 기권 33 인으로서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 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5인, 기권 27 인으로서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 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9인, 기권 29 인으로서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 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5인, 기권 36 인으로서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0인, 기권 37 인으로서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3인, 기권 35 인으로서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과 기 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추경안 심의에 밤낮없이 애써 주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추경의 취지 그대로 청년 취업난과 구 조조정 지역의 경제적 위축을 완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추경에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조ㆍ 보육 교사 증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 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가르침을 추경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 조와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

겠습니다.

(11시27분)

###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 재정위원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재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하남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 수입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권창업으로 확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하며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간 100%를 감면함으로써 청년 취업 및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36인, 반대 4인, 기권 15 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o 의사진행발언

○의장 정세균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 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 출신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제 친구이자 동료 4선 의원인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본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하시면서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과 협치를 말씀하신 것을 감명 깊게 들었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항상 온화하고 사람좋은 모습을 보여서 과거의 은원 관계를 떠나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현 정부는 마치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듯이 전 정권 사람들을 모 질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야 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었고 또 구속되었습니 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참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최근 검찰의 행태가 의원 여러분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검찰 이 적폐청산 제1호 대상입니다.

저는 홍문종 의원이 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 구구절절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선친인 고 홍우준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경민학원을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점을 감안하면지금의 혐의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짜 맞춘 것입니다.

검찰은 당초 공천헌금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홍문종 의원에 대한 10년에 걸친 모든 의혹들을 먼지털이 식으로 탈탈 털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목표로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다 수사하는 별건수사 방식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포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는 전혀 지켜지 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적폐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5개월간 검찰 조사에 성실 히 응했고 단 한 차례도 수사에 불응한 적이 없 습니다. 그리고 5개월에 걸쳐 검찰이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고 교직원 100여 명을 샅샅이 조사했 는데 무슨 증거 인멸 염려가 있습니까? 독실한 신앙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홍문종 의원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체포 사유가 됩니까?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됩니까? 현행범입니까? 파렴치범입니까?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다 해 놓고 억지스러운 이유를 대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마디 로 불구속수사 요건을 갖춘 피의자에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난 3월 17일 작고 하신 홍 의원의 선친인 고 홍우준 의원이 병상에 누워서도 본건에 대한 직접 증언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검찰이 증언을 듣지 않은 것입니 다. 지금 구순을 넘긴 홍 의원의 어머님도 위중 하십니다. 검찰이 이렇게 비정하게 몰아붙일 일 이 아닙니다. 홍 의원을 불효자식으로 만들어 한 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병중의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자는 것입니까?

저는 홍문종 의원이 무죄라고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해 주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도 받기 전에 구속 부터 하는 이런 관행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 까? 아무리 우리가 미움받는 국회의원이라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정당한 방 어권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까지 꼭 제약해서 구속해야 합니까?

의원 여러분, 홍문종 의원의 혐의가 구속 사유 라면 찬성하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우리 법원은 엄정하고 공정 하게 판결과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 법 과 원칙에 맞는지 오늘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성남 중원의 신상진 의원입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그러한 소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저의 견해인지 또한 불체포특권이라는 데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특 권이나 갑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의정활동을 폭넓게 또 국민을 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 방해에 관련된 건입니다.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상대방으 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 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구 체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입법 · 예산 심사 이외 에도 주민의 대표로서 민원 해결의 역할도 중요 하게 지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 란법은 모든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도 선출직 공 무원에게는 예외적으로 민원 해결이나 또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와 직권남용 의 한계는 불분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국회의원 은 의정활동과 민원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 나 직권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 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염동열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본인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동열 의원의 이번 건은 강원도 폐광지 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 자녀 의 우선채용이라는 지역구 환경으로부터 민원 해 결 차원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건은 폐광지

자녀 채용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의 여지도 많고 특히 금전거래 및 강요·강압·외압은 물론 평소 개인의 인사·이권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 다.

저 자신도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채용청탁이라는 불법적 요소와 민원 해결 차원의 취업 부탁이라는 둘의 경계선에서 혼란을 느끼며 많은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해서 구속한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은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원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고 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염동열 의원 개인의 신상 문제 차원을 떠나서 국회의원 모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또한 증거 인멸과 도 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 으며 공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 17.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

### 18.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

(11시38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7항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홍문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제15·16·19·20대의 국회의원으로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오면서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IT 관련 기업 대표로부터 사업에 도움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5200만 원을수수하는 등 총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

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경민대학교 교비 등합계 75억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하였으며, 2015년경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처벌받도록 한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여자들은 홍문종 의원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경민대학교 관계자들의 진술과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및 계좌추적 결과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 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하여 2018년 4월 2일 홍문종 의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판 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 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제19·20대 국회의원으로서 2012 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역임 해 오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 랜드 카지노 증설에 따른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강 원랜드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 및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강 원랜드 대표 등에게 지인 자녀 등 수십여 명의 채용을 요구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점수 조작 을 통해 부정 채용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 강원랜드 채 용 비리 관련 수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원랜드 직원 등 관련자들이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작성했던 관련 명단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입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염동열 의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 단하여 2018년 4월 11일 염동열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 학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 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o 신상발언

(11시42분)

○**의장 정세균** 이들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 랍니다.

○홍문종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부덕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20여 년 국회의원을 하면 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대려는 의도 는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구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200만 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문 계 약을 했는데요, 그 고문 계약에 자동차를 리스로 갖다 줬다고 해서, 의전용으로 갖다 줬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뇌물로 받았다…… 그 차 별로 타 본 적도 없습니다.

또 학교의 75억이나 되는 돈을 제가 횡령했다 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학교가 75억을 횡령할 돈 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 서까지 수십억 재산을 다 학교에 내놓으셨습니 다. 1원짜리 하나 횡령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학교 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돈을 홍 문종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 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변호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죄가 될 수 없 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고민을 많 이 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 재판받습니다. 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불체포특권으로 저를 보호해 주지 마십시오, 저는 법원에서 밝히

겠습니다. 왜?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 비를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1원짜리 하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제 주머니에 넣 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에게 교비를 횡령 했느니 뇌물을 받았느니 하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 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 이 저를 구속하라고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 는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립니다.

저 홍문종이 제 정치 인생을 걸고 피맺힌 절규 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제 얘기를 하 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에 남 는 일이고 우리 가정이 봐야 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홍문종이 무엇을 했 는가를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잠 한잠 못 잤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연 홍문종이가 뇌물을 먹 었는지, 과연 홍문종이가 학교 돈을 횡령했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언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저 홍문종이가 돈을 먹었다든지 홍문종이 가 뇌물을 먹었다든지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시 고 미리 결정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 다. 거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제 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이것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 께서 저 홍문종이를 그동안 바라보신 심정으로, 여러분이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정으로, 우리 국회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서 홍

문종이에게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서 싸워서 저의 유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 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국회의 위상을 지키고 앞으로 국회의 미래 를 더욱더 당당한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하는 말 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다음은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열 의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으로 가슴 시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무거운 책임과 사려 깊지 못한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산업전사 검은 광부들이 척박한 땅과 가난만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남긴 유산이 강원랜드였고,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폐특법에 적시한 폐광지 자녀 우선채용 규정에 따라 정직원이 아닌 518명의 교육생 선발이 있었고 2년간의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점을 받아야 비로소 정규직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지역쿼터 비율이 없어 폐광지 자녀들의 취업은 경쟁력이 약해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했고, 2014년부터는 50% 지 역쿼터제가 도입되어 취업 문제의 시비도 사라졌 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변명이 될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본안에 대해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의 정기수사와 재재수사를 거치면서 1차 무혐의와 사실관계가 특별히 변동이 없음에도 두 번의 소환조사와 세 번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혐의 내용은 당시 교육생 선발에 있어 의원실이 위법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검찰의 일방적이고 억울한 수사라고 반론하고 싶지만 진실 공방은 자제하고자 합니

다. 다만 검찰의 법리 적용과는 달리 직접증거나 강압의 구체성과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불분명 하고 외압 등도 전혀 무관함이 드러났으며, 구속 기소된 보좌진도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범죄 구 성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랜드 5000여 명의 직원 중 저의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측근들은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저인망 수사를 하였지만 살아 오는 동안 단돈 1원의 부정한 돈이나 단 한 건의 이권 개입이 없는, 또 다른 위법행위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청탁 명단과 혐의 적용에 결정적 실책이 드러나 수사에 혼선을 빚었고 재삼다툼의 여지가 큼에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에 49명의 의원 체포동의안 중 취업을 이유로 한 직권남용의 죄목은 이번이 처 음입니다.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많은 법조인은 국회의원의 정치행위에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범죄의 구성 또한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법기관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여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소환조사는 물론 오랫동안 성실히 조사에 임해 왔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또한 검찰의 주장과 다툼의 여지가 많 아 방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 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3년간의 오랜 수사가 주는 힘겨움, 특히 지난 1년간 반복되고 확전된 수많은 언론보도와 최근 40여 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하루하루 피폐 한 삶을 연명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3년간의 이 차디찬 형벌이 왜 이토록 저에게 가혹한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마흔세 살 늦은 나이에 꾸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아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한 가 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나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그 고충은 저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과 민 원 사이에서 올바른 기준과 판단을 하려 애써 왔 고 평창 산골의 흙수저 출신으로 억울하고 가난 한 자,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낮 은 모습, 합리적인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 니다.

저의 운명은 이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빠, 힘내'라는 둘째 녀석의 풀 죽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전에 들리는 듯합 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17.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계속)

### **18.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계속)

(11시53분)

○의장 정세균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을 국회 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연기식 무기명투표 방식 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 박정 의원, 유동수 의원, 전희경 의원, 김종석 의원, 윤상직 의원, 최도자 의원, 정 인화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 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2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 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 각각의 '가・부란'에 한 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 습니다.

'가' 또는 '부'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5분 투표개시)

### ○의장 정세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2시1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7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각 27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 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275표 중 가 129표, 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서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5표 중 가 98표, 부 172표, 기권 1 표, 무효 4표로서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 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과하 법률안(대안)

.....

투표 의원(250인)

박 용 진

찬성 의원(183인) 강 길 부 강 병 워 강석진 강석호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고 용 진 권 성 동 권 은 희 금 태 섭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명 연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金成泰 김 영 호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용 태 김 재 원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원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백 승 주 변 재 일 서 청 원 성일종 손 금 주 송 옥 주 송 석 준 송 영 길 송 희 경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재 철 안 민 석 심 상 정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오세 정 우 원 식 오 신 환 오제세 원 유 철 유기준 유 민 봉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이개호 이 만 희 이 군 현 이 동 섭 이 수 혁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양수 이용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용호 이은권 이 은 재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학재 이 철 규 이태규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혜 숙 정 동 영 전 희 경 정 갑 윤 정병국 정양석 정 성 호 정세 균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주 광 덕 조 경 태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함 진 규 추 경 호 한 선 교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 반대 의원(43인)

강 훈 식 권 미 혁 김 경 협 김 두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종민 김 한 정 김 현 권 민 병 두 박 광 온 박 재 호 박 정 박 찬 대 백 재 현 서 영 교 설 훈 소병훈 손 혜 원 송 기 헌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우 상 호 워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윤 후 덕 이석현 이 원 욱 이인영 인 재 근 이재정 이철희 정재호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승 래 표 창 원 한 정 애 홍 의 락

### 기권 의원(24인)

권칠승 기동민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박범계 박영선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형수 신경민 신 동 근 오 영 훈 유 승 민 윤 호 중 이 언 주 이종걸 전 재 수 이 학 영 전 해 철 전 현 희 추 혜 선 황 희 (기동민 · 윤재옥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50인, 찬성 의원 183인, 기권 의원 24인임)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176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훈 식 경 대 수 권 미 혁 고 용 진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동민 김 경 협 긲 경 진 김 관 영 김 동 철 김 두 관 김 규 환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태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병두 박 경 미 박 광 온 민홍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혜 련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설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어기구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원 혜 영 유동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 군 현 이용득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학 영 이 춘 석 이 해 찬 인 재 근 장 병 완 이 훈 임 이 자 장 제 원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인화 정 유 섭 정 재 호 조 응 천 조경태 조 승 래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주 홍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반대 의원(51인)

강석호 곽 대 훈 곽 상 도 권성동 김 광 수 김무성 金成泰 김 승 희 김용 태 김 재 원 김 중 로 김 진 태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현 아 나 경 원 민경욱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명 재 박성 중 박 완 수 박 인 숙 성일종 안 상 수 유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영 석 윤 상 직 윤 종 필 이 만 희 이양수 이 은 권 장 석 춘 이은재 이 종 구 이태규 전 희 경 정 용 기 정 종 섭 정 진 석 정 태 옥 지 상 욱 채 이 배 주 호 영 홍 문 종 최 연 혜 한 선 교

### 기권 의원(34인)

강석 진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명 연 김 삼 화 김세연 김 정 재 김 정 훈 박 덕 흠 박 주 선 백 승 주 신 보 라 신 상 진 심 재 철 오세 정 유기준 윤 상 현 윤 한 홍 이 동 섭 이 상 돈 이언주 이정현 이 진 복 이 학 재 이 헌 승 이현재 정 갑 윤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운 천 주 광 덕 추경호 하태경 홍일 표

(김학용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6인, 반대 의원 51인, 기권 의원 34인임)

###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훈 식 강석 진 곽 대 훈 경 대 수 고용 진 권 미 혁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기선 김 규 환 김 두 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민 기

황

희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수 김선 동 김성 태 김성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워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상 진 심기준 신 창 현 심 상 정 안 규 백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안 민 석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동수 유 은 혜 유 기 준 유 승 희 윤 관 석 유 소 하 윤 영 일 유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명수 이만회 이 상 민 이석혀 이 양 수 이 수 혁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걸 이종명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임 이 자 이 후 인 재 근 임 종 성 장 정 숙 전 재 수 장 병 완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천 정 배 진 영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 반대 의원(19인)

강석호 김무성 곽 상 도 김용 태 김 재 원 김 현 아 나 경 원 김 진 태 박 대 출 유민 봉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종 필 이 은 권 전 희 경 정 종 섭 정진석 주호영 채 이 배

#### 기권 의원(38인)

권성동 권 은 희 김 광 수 김 삼 화 金成泰 김세연 김 승 희 김 중 로 김 학 용 박 명 재 박 선 숙 박성중 백 승 주 박 완 수 신보라 심 재 철 안 상 수 오세 정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상 현 유 하 홍 이상돈 이 언 주 이종구 이 헌 승 이 현 재 장 석 춘 정병국 정 우 택 정갑윤 정태옥 주 광 덕 최 연 혜 추 경 호 하태경 홍일 표

(정진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반대 의원 19인, 기권 의원 38인임)

###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희 김 상 훈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선 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주민 박 주 선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설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민 석 안 호 영 안 규 백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석 현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장 우 이 재 정 이정 미 이정현 이 주 영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학 영 이 해 차 이 춘 석 이 헌 승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인 화 조경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광 덕 조 응 천 조 훈 현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영 진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추 혜 선 한 선 교 한 정 애 홍 영 표 함 진 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 반대 의원(22인)

강석호 곽 상 도 김기선 김 무 성 김용 태 김 재 원 김 진 태 김 현 아 박 대 출 나 경 원 박성중 유민봉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석 윤 한 홍 이 은 권 전 희 경 정 종 섭 정진석 주 호 영 채 이 배

### 기권 의원(35인)

강 석 진 김 경 진 김 광 수 김 삼 화 김세연 김 승 회 김 중 로 김 종 석 민 경 욱 박 명 재 김 태 흠 박 맹 우 성일종 심 재 철 안 상 수 오 세 정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종 필 이 상 돈 이 언 주 이 인 영 이종구 이 진 복 이 현 재 정 갑 윤 정 우 택 정 태 옥 추 경 호 하태경

홍 일 표 홍 철 호 홍 문 표 (진선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3인, 기권 의원 35인임)

###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경 대 수 강 훈 식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은 희 권칠승 김 경 진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도 읍 김 관 영 김 규 환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성 찬 김성 태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민 병 두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홍 근 박 지 원 박 찬 대 변 재 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훈 설 손 혜 원 송 기 헌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창 현 심기준 안 규 백 심 상 정 안 민 석 아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 기 준 원 혜 영 유동수 유 은 혜 윤 관 석 유 승 희 유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유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광 덕 조 훈 현 주 승용 진 선 미 진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영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 반대 의원(23인)

강석호 곽 상 도 권성동 김기선 김무성 김용 태 김 재 원 김 진 태 나 경 원 김 현 아 민 경 욱 성일종 유 민 봉 오 세 정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석 이 은 권 정 종 섭 전 희 경 채 이 배 정 진 석 한 선 교

### 기권 의원(35인)

강석진 김 광 수 김 명 연 김 삼 화 김 중 로 김 세 연 김 종 석 김 태 흠 박 명 재 박 대 출 박성중 박 완 수 심 재 철 안 상 수 유성엽 유 승 민 윤 종 필 유 의 동 윤 상 현 윤 한 홍 이 언 주 이 상 돈 이종구 이진복 이 현 재 장 석 춘 정 갑 윤 정병국 추 경 호 정 우 택 정 태 옥 주 호 영 홍 문 종 홍일 표 하 태 경

###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56인)

#### 찬성 의원(195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 훈 식 곽 대 훈 경 대 수 고 용 진 권 미 혁 권 은 희 권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민 기 김 상 훈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영 진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기선 강석호 곽 상 도 권성동 김무성 김용 태 김 재 원 김 진 태 김 현 아 박 대 출 성일종 나 경 원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석 윤 한 홍 이 은 권 정 종 섭 정진석 전 희 경 주 호 영 채 이 배 최 연 혜 한 선 교

### 기권 의원(37인)

김 학 용

김 현 권

민 경 욱

박 맹 우

박 순 자

박 인 숙

박 주 선

백 승 주

서 영 교

소 병 훈

송 옥 주

신 창 현

안 민 석

염 동 열

원 유 철

유동수

윤 영 일

이 개 호

이 명 수

이 와 영

이 원 욱

이정미

이 주 영

이 철 희

이 헌 승

장 병 완

전 재 수

정 동 영

정용기

정 인 화

조 응 천

주 승 용

천 정 배

최 운 열

표 창 원

홍 문 표

홍 철 호

김 태 년

김 해 영

문 희 상

박 경 미

박 선 숙

박용진

박 주 민

박 홍 근

변 재 일

송 영 길

신 보 라

안 규 백

엄용수

우 원 식

유기준

윤 소 하

윤 후 덕

이 만 희

이양수

이용호

이재정

이 종 배

이 철 규

이 해 차

임이자

장 제 원

전 혜 숙

정 양 석

정 유 섭

조 승 래

주 광 덕

최도자

추 혜 선

홍 문 종

홍 익 표

옂

회

진

황

훈

설

김 광 수 김 명 연 김 삼 화 김 석 기 김세연 김 종 석 김 중 로 김 태 흠 박 광 온 박 명 재 박 성 중 박 완 수 송 석 준 신 상 진 심 재 철 안 상 수 오세 정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종 필 이 상 돈 이 언 주 이 은 재 이종구 이 종 걸 이진복 이 현 재 임 종 성 정 갑 윤 정 병 국 정태옥 추경호 하 태 경 홍일 표

###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0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환 김 명 연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도 읍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성 찬 김성 태 김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영 진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김 현 권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맹 우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재 혅 백 혜 련 서 영 교 변 재 일 서 청 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설 후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창 현 신 보 라 심 상 정 심 기 준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동수 유 은 혜 유 기 준 유 승 희 윤 관 석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장우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찬 열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이 헌 승 찬 이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조 경 태 조 승 래 조 훈 현 조 응 천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승용 진선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의 락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황 회

### 반대 의원(25인)

강석호 곽 상 도 권성동 김기선 김 무 성 김 승 희 김용 태 김 재 원 김 진 태 김 현 아 나 경 원 박 대 출 신 상 진 유 민 봉 유 재 중 윤 상 직 유 영 석 윤 종 필 이 은 권 전 희 경 정 종 섭 정 진 석 채 이 배 최 연 혜 한 선 교

#### 기권 의원(34인)

김 광 수 김 세 연 김 삼 화 김 선 동 김 중 로 김 태 흠 민 경 욱 박 명 재 박성중 박 완 수 심 재 철 안 상 수 오세 정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상 현 윤 한 홍 이 상 돈 이 언 주 이 은 재 이 인 영 이종구 이 진 복 이 채 익 이 현 재 장 정 숙 정 갑 윤 정병국 정 운 천 정태옥 주 호 영 추경호 홍일 표

(홍문종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0인, 기권 의원 34인임)

###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우 김정재 정 훈 김 종 대 김 김종민 김종회 진 표 김 김 철 민 김 태 흠 학 용 김 태 년 김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노 회 찬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출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정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럱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손 혜 원 소 병 훈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어 기 구 아 호 영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희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민 이 석 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 득 이 용 호 이 원 욱 이인영 이 은 재 이 장 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걸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인 재 근 0] 훈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정 동 영 정세 균 전 혜 숙 정성호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재 호 정 유 섭 정 인 화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승 래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최 교 일 진 옂 천정배 최경환(평) 최 운 열 최도자 최 연 혜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워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16인) 강석호 곽 상 도 권성동 김 무 성 유 재 중 김용 태 나 경 원 김 진 태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종 필 이 은 권 전 희 경 정 종 섭 채 이 배 한 선 교 기권 의원(33인) 김 광 수 김 승 희 김 삼 화 김 세 연 김 재 원 김 종 석 김 중 로 민 경 욱 박 완 수 박 명 재 박 성 중 성일종 심 재 철 안 상 수 오 세 정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상 현 유 한 홍 이 상 돈 이 언 주 이종구 이진복 정 병 국 이 혀 재 장 정 숙 정 갑 윤 정 진 석 정 태 옥 주호영 추 경 호

(권성동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10인, 반대 의원 16인임)

###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09인)

홍 일 표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미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환 김 두 관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정 재 김종민 김종회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맹 우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정 박 찬 대 박홍근 백 재 현 백 승 주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워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옥주 송 기 헌 신 경 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신 상 진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오 영 훈 염 동 열 오 신 환 엄용수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콘 원 혜 영 유 기 준 유동수 유 승 회 유 은 혜 윤 관 석 유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후 덕 윤 호 중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동섭 이 석 현 이명수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인영 이장우 이용호 이 원 욱 이정미 이종걸 이재정 이정현 이종배 이 주 영 이종명 이진복 이 찬 열 이채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학 영 이 춘 석 이 해 찬 이 헌 승 인 재 근 이 훈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성호 정 동 영 정세균 정양석 정 우 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 반대 의원(19인)

강 석 호 곽 상 도 권성동 김 무 성 김 재 원 김용 태 김 종 석 김 진 태 나 경 원 박 대 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석 윤 한 홍 이 은 권 전 희 경 정 종 섭 채 이 배 한 선 교

### 기권 의원(33인)

김광수 김삼화 김세연 김수민 김중로 김태흠 김현아 민경욱 박 명 재 박 성 중 박 완 수 성일종 안 상 수 유민봉 심 재 철 오세정 유성엽 유의동 윤 상 현 유 승 민 유 종 필 이 상 돈 이 언 주 이은재 이 종 구 이 현 재 정 갑 윤 정 병 국 정 태 옥 주 호 영 추경호 정진석 홍 일 표

###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 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훈 식 강석 진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권미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 수 민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노 회 찬 문 희 상 문 진 국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순 자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지 워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형수 훈 소 병 훈 설 송 영 길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옥주 신 경 민 신 동 근 송 희 경 신 보 라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오 영 훈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이 군 현 윤 후 덕 이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용 주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장 우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임 이 자 0 후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세 균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양 석 정용기 정 우 택 정운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천 정 배 영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도 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홍 문 종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 반대 의원(18인)

강석호 곽 상 도 권 성 동 김 무 성 김용 태 김 재 원 김 진 태 나 경 원 박 대 출 오세 정 윤 상 직 유 재 중 윤 영 석 윤 한 홍 이 은 권 전 희 경 채 이 배 한 선 교

#### 기권 의원(33인)

김 광 수 김 삼 화 김세연 김 정 재 김 중 로 김 태 흠 김 현 아 민 경 욱 박 명 재 박성중 박 완 수 성일종 신 상 진 심 재 철 안 상 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상 현 이 언 주 이 상 돈 이 은 재 이 종 구 이 진 복 이 현 재 정 병 국 정 종 섭 정진석 정 태 옥 주 호 영 추경호 홍일 표

###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59인)

### 찬성 의원(21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훈 식 강석 진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환 김 두 관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문 희 상 김 현 아 노 회 찬 문 진 국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정 백 승 주 백 재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훈 성일종 소 병 훈 설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동 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상 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워 식 워 유 철 워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회 유 은 혜 윤 관 석 유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수 혁 이양수 이용득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차 인 재 근 이 현 재 훈 이 헌 승  $\circ$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갑윤 정 동 영 정성호 정 우 택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조 응 천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천 정 배 진 영 최경환(평) 최도자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하 태 경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 반대 의원(15인)

강석호 곽상도 김무성 김용태 김재원 김진태 나경원 신보라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이은권 전희경 채이배 한선교

### 기권 의원(27인)

권성동 김 삼 화 김 세 연 김 정 재 김 중 로 민 경 욱 박 명 재 박 성 중 박 완 수 심 재 철 안 상 수 오 세 정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상 현 이 상 돈 이 언 주 이종구 이 진 복 장 정 숙 정 병 국 정진석 정태옥 주 호 영 추경호 홍일 표

###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1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민 기 병 관 김 명 연 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 수 민 김성 찬 김성태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우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석 종 회 김 종 민 김 김 진 표 김 태 년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노 회 찬 김 현 권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지 원 박 홍 근 백 승 주 박 찬 대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신 경 민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창 현 신 상 진 심 기 준 심 상 정 아 규 백 아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상 호 우 원 식 오 영 훈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 봉 유 승 희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민 이수혁 이양수 이석현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채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현재 임 종 성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갑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영 천정배 최경환(평) 진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홍 문 종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18인) 김 무 성 강 석 호 곽 상 도 권 성 동 김용 태 김 재 원 김 진 태 나 경 원 박 대 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석 유 한 홍 이 은 권 전 희 경 주 호 영

### 채 이 배 한 선 교 기권 의원(29인)

김 삼 화 김세연 김 정 재 김 중 로 김 태 흠 김 현 아 민 경 욱 박 명 재 박 와 수 박 인 숙 신 보 라 심 재 철 안 상 수 오세 정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종 필 이 상 돈 윤 상 현 이 언 주 이 종 구 정 병 국 정 운 천 정 진 석 추경호 하태경 정 태 옥 홍일 표

(이원욱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14인, 반대 의원 18인임)

###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19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훈 식 강석 진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환 김 두 관 김동철 명 연 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수 김 성 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우 김 정 훈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태 년 김 철 민 김 학 용 김 진 표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병두 박 경 미 민홍철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서 청 원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상 호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 동 수 유 은 혜 유 관 석 유승희 윤 재 옥 윤 후 덕 윤 소 하 윤 호 중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 동 섭 이 석 현 이명수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양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원 욱 이 재 정 이 인 영 이장우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 주 영 이 정 현 이 채 익 이 춘 석 이 찬 열 이 철 희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희	
HIEL OLOLA			

#### 반대 의원(25인)

강석호 곽 상 도 권성동 김 무 성 김 재 원 나 경 원 김용 태 김 진 태 박 대 출 박 성 중 박 인 숙 신 보 라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종 필 윤 한 홍 이 은 권 이 진 복 이 은 재 추 경 호 전 회 경 정 종 섭 채 이 배 한 선 교

#### 기권 의원(36인)

김 기 선 김 도 읍 김 세 연 김 승 희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중 로 김 태 흠 김 현 아 민 경 욱 박 명 재 박 완 수 성 일 종 안 상 수 오세 정 유 민 봉 유 의 동 유성엽 유 승 민 윤 상 현 이상돈 이 언 주 이용득 이용호 이종구 이 종 배 이 철 규 이 현 재 임이자 장 정 숙 정 병 국 정 진 석 정태옥 주 호 영 하 태 경 홍일표

###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58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경 협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수 김 선 동 김성식 김 성 원 김성 찬 김 수 민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정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진 표 김 종 회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한 표 김 현 권 노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정 박지 워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원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창 현 신 보 라 심 기 준 심 상 정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안 규 백 오 영 훈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원 혜 영 유 기 준 유동수 유 은 혜 윤 관 석 유 승 희 윤 소 하 유 재 옥 유 후 덕 윤 영 일 유 호 중 이 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재 정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걸 이종명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짓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철 호 황 주 홍 홍 익 표 황 영 철 황 회

### 반대 의원(20인)

강석호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용태 김재원 김진태 나경원 박성중 박인숙 유재중 윤상직 윤 영 석 윤 한 홍 이 은 권 전 희 경 정 종 섭 추경호 한 선 교 채 이 배 기권 의원(37인) 김기선 김 종 석 김세연 김 정 재 김 중 로 김 태 흠 김 현 아 민 경 욱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완 수 성 일 종 신 상 진 심 재 철 안 상 수 오 세 정 유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종 필 이 상 돈 이 언 주 이태규 이 종 구 이종배 이진복 이현재 정 병 국 장 정 숙 정 갑 윤 주호영 정 진 석 정 태 옥 하태경 홍일 표

###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19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미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철 민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노 회 찬 문 희 상 민병두 박 광 온 민홍철 박 경 미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워 설 후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옥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창 현 안 민 석 심기준 안 규 백 아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원 유 철 유 승 희 유기준 유동수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소 하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윤 호 중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민 이 동 섭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0 인 재 근 임 종 성 훈 임 이 자 장 병 완 전 재 수 장 석 춘 장 제 원 전 현 희 전 해 철 전 혜 숙 정 동 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운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광 덕 지 상 욱 조 훈 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홍 문 종 한 정 애 함 진 규 홍문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홧 회

### 반대 의원(23인)

강석호 곽 상 도 권성동 김기선 김 무 성 김용 태 김 재 원 김 진 태 나 경 원 김 현 아 박 대 출 박 인 숙 유 재 중 성일종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종 필 윤 한 홍 이 은 권 전 희 경 정 종 섭 채 이 배 한 선 교

### 기권 의원(35인)

김 삼 화 김세연 김 중 로 김 태 흠 문 진 국 민 경 욱 박 덕 흠 박 명 재 박 완 수 박 성 중 박용진 심 재 철 안 상 수 오 세 정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윤 상 현 이 상 돈 이 언 주 이용호 이종구 이진복 이태규 이 헌 승 이 현 재 장 정 숙 정 병 국 정 우 택 정 태 옥 주 호 영 추경호 하태경 홍일 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5인)

### 찬성 의원(236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석 진 곽 대 훈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성호 정 양 석 정 우 택 정세균 정용기 정 운 천 정 재 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승 래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채 이 배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최 연 혜 하 태 경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한 선 교 홍일 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홍 철 호 회 반대 의원(4인) 김세연 김 용 태 윤 한 홍 전 희 경

## 기권 의원(15인)

김 정 훈 김 진 태 김 태 흠 김 현 아 박 명 재 박성중 유 민 봉 유 재 중 이종구 이 진 복 이 헌 승 정병국 정 진 석 정 태 옥 주 호 영

### ○출석 의원(279인)

정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고 용 진 권 미 혁 곽 상 도 권 은 희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규 환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수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재 원 김용 태 김 정 우 김 정 재 김종 대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한 표 김 해 영 김 김 현 미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도 종 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인숙 박 주 민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박 지 원 백 승 주 백재 혅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훈 설 성 일 종 소 병 손 금 주 훈 손 혜 원 송 옥 주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혜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후 덕 이개호 윤 호 중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동 섭 이상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 용 주 이 은 권 이 용 호 이 원 욱 이은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 현 이 종 걸 이종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장 병 완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병국 정성호 정 우 택 정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운천 정 유 섭 정인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정태옥 제 윤 경 조경태 조 승 래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개의 시 재석 의원(25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석 진 곽 대 훈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두 관 김 명 연 철 김 김 병 기 김 무 성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상 희 김 석 기 김 김성수 김성식 김선 동 김성원 김세연 김 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춘 영 호 김용 태 김 김 재 원 김 정 재 김종민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남 인 순 도 종 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찬 대 백 혜 련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혅 서 영 교 변 재 일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원 송 희 경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호 영 엄용수 안 상 수 어 기 구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유 기 준 위혜영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재 중 윤 관 석 유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군 이 동 섭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 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완 영

#### ○산회 시 재석 의원(132인)

회

황

강 병 원 강석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김 광 림 김 규 환 김기선 김도 읍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 태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아 나 경 원 문 진 국 민홍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성일종 송 석 준 송 희 경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심 기 준 심 재 철 안 상 수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원 유 철 유 동 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소 하 윤 영 석 유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은 권 이 완 영 이 용 호 이 원 욱

이장우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채 익 이철규 이 학 영 이태규 임 이 자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혜 숙 전 재 수 전 희 경 정세 균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종 섭 제 윤 경 정 인 화 정진석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조 승 래 주 승용 지 상 욱 진 선 미 천 정 배 최 교 일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추 미 애 추 경 호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 ○청가 의원(4인)

강창일 김재경 이혜훈 조배숙

###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권 영 진

###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무 국 낙 연 총 리 0]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곤 김 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강 화 외 교 부 장 곾 경 무 부 법 장 박 상 기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 부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종 환 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 운 규 환 경 부 장 관 은 김 경 고용노동부장관 김 영 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혅 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 영 춘 홍 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종

####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 용 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 현 (장관직무대리) 보건복지부차관 덬 철 권 구 금 융 위 원 최 종

### 【보고사항】

###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산 김관영 바른미래당		
특별	황주홍		201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황주홍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5. 16.
환경노동	이정미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조배숙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018. 5. 16
그치ㅇ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	이용주	보기시 기시시	2018.
법제사법	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5. 21.
국토교통	윤영일		

###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권은희	•	바른미래당	
국회운영	• 이용주	이요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018.	
	이태규	•	바른미래당	5. 16.
정보	• 노회찬	L 취 퀀	평화와 정의의	
		그의 앤	의원 모임	
	강훈식	강병원		0010
국회운영	제윤경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2018. 5. 17.
	•	김종민		0. 17.

###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	정유섭	자유한국당	
	정운천	김관영		
	•	권은희	바른미래당	
예산결산	•	오세정	바른비네정	
특별	특별 · 지상욱		2018.	
	김경진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5. 16.
	정인화	•		0. 10.
	조배숙	•		
헌법개정 및	지상욱	•	바른미래당	
정치개혁 특별	•	김광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예산결산	•	김승희	기 이 친구다	2018.
특별	•	송희경	자유한국당	5. 17.

### ○의안 제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윤상직·박순자·심재철·정진석· 김무성 · 김순례 · 이은권 · 김진태 · 주광덕 · 김종석 의원 발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정인화·윤영일·홍문표·진선미· 이동섭・천정배・조배숙・위성곤・김중로・ 황주홍·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5. 김성식·김관영·최도자·최교일· 조경태 · 이태규 · 이동섭 · 박선숙 · 김광림 · 정병국 · 정인화 · 이철희 · 천정배 · 유승민 · 이언주 · 하태경 · 권은희 · 조배숙 · 김경진 · 이진복 · 이찬열 · 정운천 · 황영철 · 신상진 · 김중로 · 원혜영 · 김세연 · 오제세 · 신용현 · 손금주 김광수·김삼화·김수민 의원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5. 최교일·이양수·경대수·김승희· 송희경·곽대훈·여상규·김성찬·김규환· 정유섭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박명재·신보라·이종명·황영철· 박덕흠 · 김정훈 · 정태옥 · 이정현 · 김정재 · 박성중ㆍ정인화ㆍ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김영호·강훈식·권미혁·김현권· 남인순 · 박정 · 소병훈 · 신창현 · 심재권 · 한정애 의원 발의)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5. 조승래·김병욱·노웅래·김민기· 전재수 · 김병기 · 안민석 · 오영훈 · 유은혜 · 설훈 의원 발의)

5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이종명·김성찬·문진국·최연혜· 김규화 • 박명재 • 엄용수 • 김태흠 • 이정현 • 박성중·정갑윤 의원 발의)

5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이상돈·장정숙·김종회·조배숙· 김성수 · 유승희 · 김경진 · 문진국 · 한정애 · 김동철 의워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5. 이상돈·윤영일·장정숙·김종회· 조배숙 · 김성수 · 유승희 · 김경진 · 문진국 · 한정애ㆍ이정미ㆍ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5. 천정배·박주현·조배숙·김광수· 장정숙·장병완·윤영일·정인화·황주홍· 김경진 의원 발의)

5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5. 이상돈·윤영일·박선숙·장정숙· 김종회·조배숙·김성수·유승희·김경진· 문진국·한정애·이정미·김동철 의원 발의) 5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8. 5. 15. 민홍철·안호영·임종성·윤관석· 안규백·문진국·함진규·최인호·정종섭· 이찬열·조정식 의원 발의)

5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주호영·성일종·김현아·신상진· 김명연·박명재·이채익·박완수·이진복· 김광림 의원 발의)

5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백혜련·강병원·강훈식·김현권· 윤후덕·노웅래·신창현·정춘숙·박경미· 김상희·이춘석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백혜련·강병원·강훈식·김현권· 윤후덕·노웅래·신창현·정춘숙·박경미· 김상희·이춘석 의원 발의)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노웅래·송기헌·정동영·김민기· 조승래·백혜련·신창현·안민석·조배숙· 유은혜·김병욱·전현희·이학영·이석현· 천정배·소병훈·원혜영·심기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김기선·하태경·박덕흠·경대수·

함진규·신보라·원유철·김규환·이군현· 추경호 의원 발의)

5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6. 최교일·이양수·경대수·김승희· 송희경·곽대훈·여상규·김성찬·김규환· 정유섭 의원 발의)

5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이철회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이철희·기동민·유승희·원혜영· 진선미·정성호·노웅래·남인순·강훈식· 정춘숙·박용진·민홍철 의원 발의)

5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신창현·노웅래·김철민·권칠승· 심기준·문희상·김한정·박정·윤관석· 한정애·김병기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6. 표창원·이철희·윤후덕·유동수· 윤관석·안민석·신창현·임종성·박주민· 정인화·김성수·강창일·이재정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6. 이재정·윤호중·백혜련·이춘석· 이용득·이학영·윤관석·정재호·홍익표· 원혜영 의원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이재정·윤호중·백혜련·이춘석· 이용득·이학영·윤관석·정재호·홍익표· 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6. 강훈식·윤관석·김병기·이동섭· 박홍근·백혜련·김경협·신창현·안호영· 박주민 의원 발의)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윤한홍・박맹우・성일종・함진규・

이종명 · 문진국 · 박성중 · 정갑윤 · 신보라 · 이철규 의원 발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6. 강훈식·윤관석·김병기·이동섭· 박홍근 · 백혜련 · 김경협 · 신창현 · 안호영 · 박주민 의원 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강훈식·윤관석·김병기·이동섭· 박홍근 · 백혜련 · 김경협 · 신창현 · 안호영 · 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6. 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 이정미 · 권미혁 · 김종대 · 정춘숙 · 서형수 · 이찬열·박범계 의원 발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6. 강훈식 · 윤관석 · 김병기 · 이동섭 · 박홍근·백혜련·김경협·신창현·안호영· 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황주홍·권칠승·이찬열·유성엽· 김경진 · 천정배 · 조배숙 · 김중로 · 윤영일 · 조경태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황주홍 · 권칠승 · 이찬열 · 유성엽 · 김경진 · 천정배 · 조배숙 · 김중로 · 윤영일 · 조경태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윤후덕·박덕흠·안규백·이찬열· 송옥주・박정・이수혁・백재현・안호영・ 문희상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윤후덕・안규백・이찬열・송옥주・ 박정ㆍ이수혁ㆍ백재현ㆍ안호영ㆍ문희상ㆍ 김병기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심재권·송옥주·심기준·이동섭· 이수혁 · 장정숙 · 박인숙 · 박주민 · 설훈 · 조정식 의원 발의)

5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7. 정우택・이종명・金成泰・이완영・ 김승희 · 권성동 · 김석기 · 원유철 · 최연혜 · 이진복ㆍ이종배ㆍ정용기ㆍ김규환 의원 발의) 5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박선숙·박지원·윤영일·장정숙· 채이배 · 김현권 · 권칠승 · 이용호 · 김관영 · 박주현 의원 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박선숙·장정숙·윤영일·권칠승· 유의동 · 김관영 · 채이배 · 박지원 · 인재근 · 이용호 · 김현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손혜원·강훈식·김경협·김성수· 노웅래 · 문희상 · 안민석 · 유동수 · 유은혜 · 홍의락 의원 발의)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유은혜·안민석·우상호·윤소하· 이석현・정춘숙・김현권・홍익표・송기헌・ 조승래·인재근·심기준 의원 발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손혜원·김경협·문희상·박정· 신창현 · 안민석 · 원혜영 · 유은혜 · 이재정 · 한정애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박인숙·김경진·이군현·이종구· 강석진 · 유동수 · 송희경 · 이명수 · 이종배 · 김무성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곽대훈·이채익·김정재·추경호·

김규환·정유섭·유민봉·최연혜·정진석· 이철규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이찬열·황주홍·권은희·이춘석· 위성곤·윤후덕·강병원·이언주·이동섭· 김삼화·유성엽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7. 곽대훈·이채익·김정재·추경호· 김도읍·김규환·정유섭·유민봉·최연혜· 정진석·이철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7. 김영호·김성수·김현권·노웅래· 박정·손금주·신창현·이재정·정춘숙· 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곽대훈·이채익·김정재·추경호· 김규환·정유섭·유민봉·최연혜·정진석· 김상훈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곽대훈·윤재옥·이채익·김정재· 추경호·김규환·정유섭·유민봉·이철규· 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7. 박인숙·경대수·김세연·김성원· 박주민·유동수·송희경·이명수·이종배· 김무성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박인숙·추경호·노웅래·이군현· 정진석·박주민·유동수·송희경·이명수· 이종배·김무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7. 이찬열·황주홍·윤후덕·김삼화· 조배숙·채이배·유성엽·김중로·김수민· 최도자·오세정·신용현·유동수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7. 곽대훈·윤재옥·이채익·김정재· 추경호·김규환·정유섭·유민봉·최연혜· 정진석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박인숙·경대수·김승희·김세연· 김성원·이군현·정진석·박주민·유동수· 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김영호·김성수·김현권·노웅래· 박정·손금주·신창현·이재정·정춘숙· 임종성 의원 발의)

5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김승희·이종구·함진규·송희경· 신보라·이은권·박덕흠·김상훈·이명수· 김성찬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장정숙·박주현·전혜숙·황주홍· 김광수·안호영·박선숙·김경진·설훈· 유성엽·정동영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곽대훈·김상훈·권칠승·김정재· 추경호·이채익·김규환·황영철·김학용· 박성중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윤영일·김철민·안호영·이원욱·남인순·임이자·이용호·박주현·박선숙·황희·이학영·천정배·백혜련·황주홍·이개호 의원 발의)

북한에 억류·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2018. 5. 18. 이언주·하태경·유승민·김중로· 김삼화·이동섭·신용현·주승용·최도자· 김수민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업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엄용수·이종명·송석준·홍일표· 강길부 · 안상수 · 이정현 · 지상욱 · 유재중 · 박성중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엄용수·이종명·송석준·홍일표· 강길부 · 안상수 · 이정현 · 지상욱 · 유재중 · 박성중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엄용수·이종명·송석준·홍일표· 강길부 · 안상수 · 이정현 · 지상욱 · 유재중 · 박성중 의원 발의)

미디어교육지원법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신경민·김성수·유승희·박홍근· 김경진 · 고용진 · 박정 · 권칠승 · 김해영 · 변재일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유경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유경 의원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윤경 의원 발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 김현권・남인순・박경미・유동수・전재수・ 제윤경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윤경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 김현권・남인순・박경미・유동수・전재수・ 제유경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윤경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박완수·이채익·김정재·함진규· 김재원・추경호・조경태・유동수・정태옥・ 성일종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윤경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김경진·이동섭·김성수·김광수· 송희경·장병완·김태흠·박주민·황주홍· 천정배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유경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박완수·이채익·김정재·함진규· 김재원・추경호・조경태・유동수・정태옥・ 성일종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업용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엄용수·이종명·송석준·홍일표· 강길부・안상수・이정현・지상욱・유재중・ 박성중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엄용수·이종명·송석준·홍일표· 강길부 · 안상수 · 이정현 · 지상욱 · 유재중 · 박성중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송옥주·박경미·권칠승·김성수· 제윤경·전재수·남인순·강훈식·김현권· 유동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위성곤·신창현·박정·권칠승· 이찬열·김철민·설훈·김현권·윤관석· 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황주홍·이찬열·장정숙·조배숙· 김광수·윤영일·김경진·정인화·정동영· 장병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황주홍·이찬열·장정숙·조배숙· 김광수·윤영일·김경진·정인화·정동영· 장병완 의원 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전재수·박경미·송옥주·권칠승· 김성수·제윤경·남인순·강훈식·김현권· 유동수·김민기·조승래·박재호·이종걸· 최인호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신용현·지상욱·이동섭·김삼화· 오세정·김중로·김관영·오신환·김동철· 김성수·박경미·장병완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엄용수·이종명·송석준·홍일표· 강길부·안상수·이정현·지상욱·유재중· 박성중 의원 발의)

이상 3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8. 5. 21.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5. 21.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8. 4. 17. 최교일·강길부·강석진·강석호·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화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서청원 · 성일종 · 송석준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군현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헌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 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8. 4. 23. 김성태·김동철·장병완 의원 외 154인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1. 박광온·김태년·권칠승·김해영· 문미옥·이찬열·백혜련·이석현·김현미· 신경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4. 김경수·전재수·최인호·김영호· 민병두·박홍근·민홍철·유동수·김철민· 유승희·이철희·박재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7. 7. 7. 신보라·송희경·김순례·박덕흠· 임이자 · 장석춘 · 김승희 · 김성찬 · 김종석 · 이종명 · 배덕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7. 박정·어기구·송옥주·김종민· 윤관석 · 박찬대 · 서형수 · 정동영 · 이철희 · 박주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8. 7. 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 이동섭 · 박준영 · 이찬열 · 손금주 · 최경환(국) · 김현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3. 26. 추경호·이종배·곽대훈·박맹우· 김석기 · 김광림 · 엄용수 · 박명재 · 곽상도 · 김선동·정진석·조경태·정태옥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2018. 4. 6.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0건 2018. 4. 6. 정부 제출) (이상 10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14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 ○청원 제출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청원

(2018. 5. 17. 고승우로부터 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 ○서면답변서 제출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5. 15. 대법원 제출)

청와대의 국민청원 전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5. 18. 대법원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